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68호 2009. 9. 14.

공 고

제2009-722호	산불 감시원(기간근로자) 채용 공고	2
제2009-724호	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	6
제2009-725호	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8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722호

산불 감시원(기간근로자) 채용 공고

중랑구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산불감시원 모집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코자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09년 9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모집분야 및 자격

○ 모집분야 : 산불감시원

○ 인 원 : 00명

○ 자격 기준

- '09. 8. 30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

-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중랑구로 등록되어 있는 자

- 질병 등 없는 건강한 자

○ 자격 제한조건

- 산림순찰에 장애가 있는 자 (시·청각, 간질, 정신질환자 등)

- 고교 및 대학(대학원 포함) 재학생

단, '0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야간대학 재학생은 신청 가능

○ 선발기준

가.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이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 등을 적용하여 우선 선발할 예정임

- 산불감시,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- 자동차, 오토바이,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,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
 -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,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
- 나. 위의 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.
-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
 - 3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
 -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
 -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,125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
- 다. 근로자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시 근로자에 대한 면접과 체력검정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체력상태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.

2. 모집방법

- 서류심사
 - 2009. 9. 21. (합격자 발표)
- 선발일
 - 2009. 9. 30.

3. 근무기간 : 2009. 10. 01 ~ 2009. 12.

4. 근무내용 및 장소

- 근무내용
 -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
 - 무단 입산자 등 감시
 - 인화물질 제거 활동
 -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
 - 뒷불감시 및 진화장비 관리

- 산불 홍보물 부착 및 관리
- 기타 산불관련 업무

○ 장 소 : 중랑구(공원녹지과) 지정 장소

5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○ 기 간 : 2009. 9. 14(월) 09:00 ~ 9. 18(금) 18:00까지

○ 교부·접수처 :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(☎ 490-3395 ~ 8)

* 신청서는 구청홈페이지(<http://jungnang.seoul.kr>)에서 내려받기 가능

○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
○ 제출서류

- ① 지원 신청서
- ② 주민등록등본 1부
- ③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(최근 1개월 내)
- ④ 국민연금수급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⑤ 구직등록증 및 해당분야 기술교육 이수·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 자에 한함)
- ⑥ 기초수급자증명원, 기타증명서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○ 공고방법 :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·동 주민센터 게시판

6. 운영방법

○ 근무시간 : 1일 8시간(13:00~22:00, 저녁시간 : 18:00~19:00), 주40시간 근무

○ 보수수준 : 1일 45,000원(기본급:40,000원, 부대비:5,000원)

※ 업무특성상 주휴일은 근무하며 평일(월~금 등)을 휴일로 대체 지정 운영

※ **주휴일** 근무는 기본 임금만 지급되며, 휴무수당은 없음(**휴일**은 휴무수당 지급)

※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 주 1일 주차 지급

※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.

7. 채용결과 최종 발표 : 2009. 9. 25.(금) - 개별통보

8. 임시소집 : 2009. 9. 29.(화) 15:00 - 중랑구청(개별통보)

9. 기타사항
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, 허위기재 적발시 채용불가
- 기타사항(연락불능 등)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공원녹지과(☎ 490-3395~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9월 14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처리실태 및 주민 만족도, 개선 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,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높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행업체 평가(안 제8조, 제9조)

-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 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.

나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(안 제12조)

-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·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, 청소·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운영토록 함.

다. 평가결과 반영(안 제20조, 제21조, 제24조)

-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

-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.
-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131-701, 전화:02)490-3376, FAX:02)490-3704, E-mail : yhsckim@jungnang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(☎490-3376)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725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9월 14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, 서울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,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징감, 가산금징수 및 징수절차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명시(안 제2조9호, 제10조의2)
 -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정의
 -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, 대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도록 명시
- 나. 폐 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(별표 4 - 안 제27조제1항제2호)
 - 폐 소형 가전제품 수거수수료 면제 : 핸드폰 외 31개 품목
 - 폐 소형 가전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면 대행 업체 및 구 기동반 수거
- 다.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, 가산금 징수 및 징수절차 정비(안 제33조, 제33조의2, 제34조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기준」 지침에 의한 맞춤법, 띄어쓰기 등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131-701, 전화:02)490-3376, FAX:02)490-3704, E-mail : yhsckim@jungnang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(☎490-337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